

2 국외전출시 과세제도에 대하여(답변자: 이태화 국제부원)

<회답>

국외전출시 주식양도소득세 과세특례(일명'국외전출세')제도가 2016년 세법개정 시 신설되었고, 2018년1월1일 이후 국외전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. (소득法 §118의9~18, 소득습 §178의8~12 신설)

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경우 국외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며,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과세대상(소득세法 94조 1항 3호 주식)

i)상장법인의 대주주 보유주식

ii)비상장법인의 주식

※국내주식만 해당되며 추후 시행 성과 등을 보아가며 확대 검토

※과생상품은 제외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장내 과생상품 중 코스피 200선물, 코스피 200옵션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소득(배당소득과 과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“배당부상품”)에 대하여는 2016년부터 과세하였으나 국외전출시의 과세대상에서는 제외 되었음.

② 납세의무자

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거주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i)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·거소가 있을 것

ii)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할 것

※출국당시 소유한 국내주식(①과세대상 주식) 등의 평가이익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.

③ 납세의무성립일

국외전출일

④ 과세표준

국외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차익

※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 통산한다

- 양도가액: 출국일 시가(시가산정이 어려울 때는 다음방법 적용)

- i (상장주식) 기준시가
(국외전출일 전후 1개월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)
 - ii(비상장주식)
 - 매매사례가액(국외전출일 전후 각 3개월)
 - 기준시가(순손익가치, 순자산가치를 3:2로 가중평균한 가액)를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
 - 필요경비: 취득가액 + 자본적지출액 - 기본공제(2,500,000원)
- ⑤ 세율: 20%(국내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율)
- ⑥ 세액공제
추후 국내주식 실제 양도 시 아래의 세액을 공제
(既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방식)
- i (조정공제) 실제 양도가액이 낮은 경우 차액의 20%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, 양도일 후 3월내 공제신고 해야 한다.
※세액공제액=하락금액 x 20%
 - ii(외국납부세액공제) 이주국에 납부한 세금 중 일정금액 공제
※이주국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는 경우 배제함
 - iii(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)
국내에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 경우 관련세액 공제
- ⑦ 신고·납부
국외전출일 전일까지 납세관리인,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한 후 국외전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·납부
※무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20% 무신고 가산세 등 부과
- ⑧ 납부유예
납세담보제공, 납세관리인 지정 등 요건충족시 5년을 한도로 주식양도시까지 납부유예 허용. 주식양도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 납부
※ 「국외유학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유학은 최대 10년
※ 납부유예관련 이자상당 가산액은 연 1.6%
- ⑨ 환급
i 출국 후 주식 미양도 상태로 5년내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
ii 출국 후 5년내 거주자에게 증여 또는 상속한 경우 기납부세액 환급(환급가산금은 없음)

※ 거주자판정: 재외동포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8년1월부터 거주자 판정기준의 거소요건을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→ 1과세 기간 중 183일 이상으로 완화함

※참고(대주주의 판정기준)

(1)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의 소유주식비율 또는 시가총액이 다음 각 구분에 따른 지분율 또는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

형태		지분율	시가총액	적 용 시 기
주권 상장 법인	유가 증 권 시장	3%	100억	13.7.1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양도분
		2%	50억	13.7.1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후 양도분
		1%	25억	16.4.1이후 양도분
		1%	15억	18.4.1이후 양도분
		1%	10억	20.4.1이후 양도분
		1%	3억	21.4.1이후 양도분
	코스닥 시장	5%	50억	13.7.1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양도분
		4%	40억	13.7.1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후 양도분
		2%	20억	16.4.1이후 양도분
		2%	15억	18.4.1이후 양도분
		2%	10억	20.4.1이후 양도분
		2%	3억	21.4.1이후 양도분
	코넥스 시장	4%	10억	13.8.29부터 시행
		4%	3억	21.4.01이후 시행
주권 비 상장 법인	벤처 기업	5%	50억	13.7.1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양도분
		4%	40억	13.7.1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후 양도분
	위 외	3%	100억	13.7.1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양도분
		2%	50억	13.7.1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후 양도분
		4%	25억	17.1.1이후 양도분
		4%	15억	18.1.1이후 양도분
		4%	10억	20.4.1이후 양도분

(2)주주1인이란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을 말하며, 기타 주주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1인과 다음 각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.

구 분	기 타 주 주
주주1인 등(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)의 소유주식비율의 합계가, 해당법인의 주주 1인 등 중에 최대인 경우	①혈족(6촌)·인척(4촌) ②배우자(사실혼 포함), 친생자 등 ③주주·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
위 외의 경우	①직계존비속, 배우자(사실혼 포함) ②친생자 및 그 배우자·직계비속 ③주주·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